-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500호

2020. 9. 17.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0. 09. 08. 유영주 의원, 최재란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0. 09. 11. 복지건설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8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
2020. 09. 17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최재란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최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, 폭언 등 인권 유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,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.

○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.

○ 경비노동자의 기본시설 설치,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
○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및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도, 인권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 ~ 제7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신훈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경비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○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,

- 지난 5월,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회적 화두가 되었음. '경비원 상대 갑질'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,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로 떠오른 경비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.
- 지난, 9월 11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'경비원 갑질'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음. 그 중, 시장·구청장으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의무가 부여되는 부분은 눈여겨볼만한 대목임.
- 그 밖에도 강북구, 구로구, 노원구, 영등포구에서 경비노동자 고용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 상태임.
- 이를 종합할 때, 양천구 내에서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.

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, 별 문제는 없음.
- 안 제3조는 ①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, ② 입주자 등[2]으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[3] 제공, ③ 시책 추진 과정에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양천구청장의 책무로 정의하고 있으며 별 문제는 없음.
- 안 제4조는 경비노동자가 누릴 권리로 ① 차별받지 않은 권리, ②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, ③ 인권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. 또한, 입주자 등은 양천구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안 제5조는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①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를 위해 신청한 공동주택 지원금 ② 법률지원 연계 ③ 정신건강서비스 ④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. 이는 경비노동자들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6조는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 그 중, 제6조제3항은 입주자 등이 경비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<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>의 심의사항으로 반영하여, 일종의 간접적인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경각심을 주려는 조문으로 사료됨. 이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- 안 제7조는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는 없음.

---

2) ‘입주자 등’이란 본 조례안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, 입주자대표회의(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함), 주택관리업자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함.

3) ‘기본시설’이란 본 조례안 제2조제1항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·편의시설(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함) 및 냉난방설비를 말함.

○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최근의 사회적 관심과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,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8명, 출석의원 5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